

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. 8. 10 선고 2021가단649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나경광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

담당변호사 김정웅

변 론 종 결 2022. 7. 13.

판 결 선 고 2022. 8. 10.

## 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전라남도 강진군 D 임야 35569㎡ 중 35741분의 3321 지분에 관하여, E과 피고 B 사이에 2020. 8.

21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 B은 E에게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20. 8. 25. 접수 제88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, 전라남도 강진군 D 임야 35569㎡ 중 35741분의 23987 지분에 관하여 E과 피고 C 사이에 2020. 8. 2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 C는 E에게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02. 8. 25. 접수 제88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1)

## 이 유

### 1.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제424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제347조 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채권에 기하여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그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,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(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다289828 판결 등 참조).

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에 대하여 2021. 11. 3. 의정부지방법원 2021하단21516호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F이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이 사건 소장이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인 2021. 12. 3. 접수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. 그리고 원고가 E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의 행사로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남요섭

1)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취지를 기재와 같이 선택한다.